

28살 정년제
결혼·임신 퇴직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 해임된 중앙대 조무원 이광진·박은실·최은순(왼쪽부터) 씨. “한창 일할 나이인 28살의 정년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부당해고”라며 28살 정년 철폐와 원직 복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여성계, 고용평등법 위반주장 거센 반발

여성의 일할 권리를 빼앗는 ‘28살 정년’ ‘결혼·임신에 따른 퇴직’ 등에 대한 강요가 잇따라 여성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대학교, 병원, 호텔 등에서 직장 내규로 여직원에게 ‘28살 정년’ ‘결혼·임신 퇴직’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 고용 현실을 위협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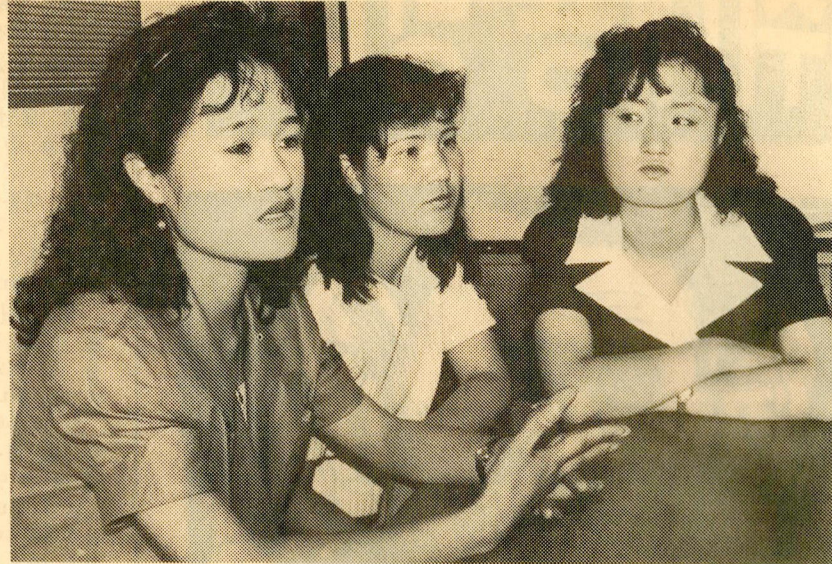
최근 중앙대는 28살 정년규정에 따라 이광진(28)씨 등 조무원(사무보조원) 4명을 지난 31일자로 해임했고, 부산 파라다이스 비치호텔은 89년 11월 결혼한 김진옥(36)씨에게 3년째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부·노총 여성국·지방노동사무소·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에 고발, 진정, 구제를 요청한 이러한 사례는 1백여건이 넘는다.

전체 조무원 32명 가운데 8월 말로 만 28살이 된 조무원 4명을 해임한 중앙대쪽은 “88년 7월 18일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중 ‘조무원 정년은 28살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씨 등은 “28살 정년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도 못미치는 단체협약이므로 무효”라면서 28살 정년 철폐를 요구하

고 원직에 복직될 때까지 출근투쟁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중앙대는 88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무원 28살 정년’에 대한 반발이 높자 구체적으로 ‘서기나 서기보(임금이 조무원의 2배, 정년 57살) 결원시 조무원 우선 임용’이란 단서 조항을 마련해 무마했다. 그러나 단협 이후 발생한 12명의 서기보 결원 자리에 조무원은 단 1명도 임용되지 않았고, 촉탁으로 4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지적인 중앙대 노동조합은 9월 중순께 총장과 재단 이사장을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박탈하는 것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로부터 구체요청을 받은 부산지방노동위에선 여러 차례 파라다이스 비치호텔에 김씨의 원직복귀를 명령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아 오는 4일의 중앙노동위원회 4심 결정과 주목된다. 한편 여성문



최근 중앙대 28살 조무원 4명·부산 비치호텔 결혼 1명 해고 사실상 해임...고발·진정 건수만 1백건 넘어 노동위의 원직복귀 명령 불구 시정안하기도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일 서울지방노동사무소, 여성민우회 등에 진정서와 구체신청서를 낸 데 이어 노총 여성국, 정부 제2 장관실에도 진정할 예정이다.

부산의 김진옥씨도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의 일할 기회를

제 공동변호인단의 박주현 변호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기정년을 규정한 취업규칙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1항 위반으로 무효이고 △결혼·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2항,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며 △결혼을 이유로 부당전직시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76년 여은행원 결혼퇴직 각서 제 폐지, 85년 방일물산 여직원 이경숙씨의 조기정년 철폐소송 등으로 자취를 감췄던 조기정년, 결혼·임신 퇴직제는 최근 들어 직장 내규에 따른 조기정년, 결혼·임신 뒤 업무박탈·부당전직·

퇴직 회유 또는 폭행·촉탁계약 뒤 해고 등의 형태로 바뀌어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

실례로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대학은 기능직 사무보조원의 정년 30살, 산전산후휴가 1달 △대구동산병원의 간호조무사는 40살 정년 △제주 파라다이스 카지노 여직원의 정년은 35살 △한국병원의 경우 평간호사는 35살, 간호조무사 30살, 수간호사 40살 등으로 차등 정년제를 두고 있으며 영남대, 영남의료원 등도 사무직 여성에게 정년 28살을 적용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조기정년, 결혼·임신퇴직 제 성행에 대해 노총 여성국 김

영자 국장은 “헌법 제2장 10조, 근로기준법 제5조에 남·여라는 성적인 차이로 차별 대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법을 무시한 채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직장내규로 근무연한을 제한하거나 결혼·임신에 따른 퇴직 등의 조기정년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 상담간사 정양희씨도 “일부 대학과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성 조기정년제는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여성 취업인구의 증가와 사회진출 요구 추세에 맞춰 이런 불완전 고용형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22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효재)은 “조기정년, 결혼·임신 퇴직 강요는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을 위협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라면서 전 여성계가 연대해 신중 결혼·임신 퇴직 및 조기정년 철폐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신연숙 기자>